

대전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3가단201062(본소), 2024가단207791(반소) 판결
[구상금 · 정산금 청구의 반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천

피고(반소원고)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

변론 종결2024. 10. 15.

판결 선고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 B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(반소피고)에게 38,335,92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3. 5. 4.부터, 피고 C은 2023. 4. 27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피고(반소원고) B이 부담하고,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 B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38,335,924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6. 1.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 B에게 31,375,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미장·방수 및 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, 2021. 4. 30. D 주식회사(이하 'D'이라 한다)로부터 대전 서구 E 일대 사옥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계약금액 517,000,000원(공급가액 470,000,000원), 공사기간 2021. 5. 1.부터 2021. 9. 30.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.

나. 원고는 2021. 9. 13.경 피고 B에게 위 공사 중 습식공사 내지 방수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계약금액 437,000,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. 위 계약금액은 원고와 D 사이의 도급계약 공급가액 470,000,000원의 93%로서, 원고가 D로부터 수령하는 기성금(정산금) 중 7%를 공제한 나머지 93%를 피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B은 위 공사를 수행하기로 정한 것이다. 원고와 피고 B은,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매입과 노무비 등 공사비 지출은 원고 명의로 하여 공사비 지출액이 D이 지급하는 기성금 중 93%를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은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되고, 공사비 지출액이 D이 지급하는 기성금 중 93%를 상회할 경우 그 차액은 피고 손실로 귀속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(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계약을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.

다.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F와 함께 2021. 11. 18. 원고에게 '위 습식공사를 원고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정산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이 상이한 것이 있다면 정산 후 금액에

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.'라는 내용의 각서(이하 '이 사건 각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주었고, 그 각서 하단에 '연대보증(공동)'이라고 기재하였다.

라. 원고가 2022. 4. 경 D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으로부터 7%를 공제한 내역과 원고의 공사비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한 결과,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보다 공사비 등 비용 38,335,924원을 더 지출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2022. 4. 최종 정산 결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보다 공사비 등 비용 38,335,924원을 추가 지출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,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 내용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 대하여 공동하여 책임을 진다.

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,335,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은 2023. 5. 4.부터, 피고 C은 2023. 4. 27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위 정산금에 대하여 2022. 6. 1.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%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기일은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,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위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).

3.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B 주장

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기는 하였으나 원고 직원인 G과 원고가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현장소장 F가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, 피고 B이 직접 시공한 부분은 배수판 및 방수층 보호판설치 공사뿐이고 나머지 공사는 원고가 시공하였는데, 피고 B이 원고를 위하여 공사대금 31,375,500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

있다.

나. 판단

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31,375,500원을 초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권세진